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60호

2026년 부산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2026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2.

부산광역시장

1. 신청자격 및 신청접수 부서

가. 신청자격(아래 1) 및 2) 모두 충족)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공고일(2026. 1. 12.) 기준 부산광역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만 신청 가능

2) 1)과 동일한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 1)과 단체명, 대표자명(공동대표 모두 포함) 등 명의를 다를 경우 공모신청서 제출기한 내
변경 후 제출(발급 문의: 관할 세무서)

나. 접수부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주관 부서(과)

2. 공모신청서 제출 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2026. 1. 19.(월) ~ 2. 4.(수) 18:00

나. 제출방법: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문서24, 등기우편 중 택1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www.losims.go.kr > 공모사업 > 공모사업 검색 > 2026년 부산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 등기우편 제출 시 2. 4.(수) 18:00 소인까지 유효

※ 등기우편 수신처: 우)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0000과*

* 접수부서 기재(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주관 부서)

※ 방문, 이메일 등은 접수 불가하며, 마감일(2. 4.)은 보탬e 및 문서24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조기신청 권장

3. 제출 서류

가. 제출서류: 2026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신청서

※ 전년도 공모신청서 서식 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서식으로 대체할 수 없음

1) 구성

가) 2026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신청서

나) [첨부1]단체소개서

다) [첨부2]2026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계획서(공모신청용)

라) [첨부3]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세무서 발급)으로 대체할 수 없음

마) [첨부4]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 사본

바) [첨부5]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 등에 따른 임원 명단

사) [첨부6]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라)와 동일한 명의(단체명, 대표자명(공동대표 모두 포함) 등)여야 함

아) [첨부7]지방세납세증명서

※ 보탭e 접수 시 마이데이터 제공 동의 후 증빙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단, 마이데이터 연계 실패, 휴대전화 인증 불가 등의 경우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법인: 법인번호로 조회 / 비법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자) [첨부8]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2) 서식: 붙임2

※ 다운로드 방법: 부산광역시청 누리집(www.busan.go.kr) > 부산소식 > 공고 > 고시공고 > 2026년 부산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 공고

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미응답·미협조 단체는 등록요건 확인과 관련된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4. 지원절차

가. 사업 공고(1. 12.)

나. 공모신청서 접수(1. 19. ~ 2. 4. 18:00)

다. 사업설명회(1. 21.)

라. 지원 신청서 검토(2월) 및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의·의결(3월)

마. 선정 결과 통보(4월 초) 및 회계처리지침 교육(4월)^{*별도안내예정}

바. 보조금 교부신청서 접수(4. 15. ~ 11. 13.)

사.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6. 4. ~ 12. 15. 범위 내에서 단체별 교부결정서에 따름)

※ (6.3.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의거 6. 4.부터 보조금 교부 예정

5. 사업 신청 유형

○ 신청사업은 아래 7개 유형 중 1개 단체당 1개 사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유형		사업예시
①	기후변화·환경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온실가스 감축 관련 교육 및 캠페인 강·하천 살리기 등 환경보전 에너지·자원절약 생활화, 자원순환 및 생활쓰레기 줄이기 등
②	안전한 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해·재난 예방 및 구조·구호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명존중 확산 사회안전 및 시민안전 활성화 등
③	사회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노인·아동·장애인·다문화 등 사회적 복지 증진 치매 예방교육 지원, 고령자·노린학습자 학습 지원 소외계층 복지·인권 증진 청년·시니어 등 사회적 약자 고용 지원 및 고용환경 개선 출산 장려 및 보육 환경 개선 시민건강증진 및 의료지원 등
④	시민사회 참여 및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등 사회참여 확대, 청렴·공정사회 조성 청소년 시민의식 함양, 민주시민 교육, 교육공동체 육성 지역·계층·세대간 갈등해소, 성평등 인식 개선 다문화·북한이탈주민 생활적응 지원, 노인층 디지털 교육, AI·디지털 리터러시와 윤리 관련 사업 전통문화 계승발전, 융·복합형 문화·예술 활동 등
⑤	통일안보 및 국제 교류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 안보의식 고취, 평화통일 교육, 세계평화 증진활동 국경일 의미 알리기, 국토 보전 등 나라사랑 활동 국제연대 협력, 재외동포 해외 교류 국제적 문화·체육·여성·청소년 교류 활동 등 ※ 국가적·외교적 정부 소관사항과 국제개발 및 구호 사업 지양
⑥	자원봉사 및 기부 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확산 및 활성화 청소년 사회봉사, 격오지 의료봉사, 재능기부 등
⑦	내 사랑 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공동체 및 민생경제 활성화 부산 바로 알기, 전통시장 애용 등

※ 제시된 사업유형별 사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임(절대적 기준이 아님)

6. 보조금 지원액 및 자부담금 비율

가. 보조금 지원액은 사업의 성격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부산광역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나.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진할 사업의 소요경비(사업비)만 지원 가능하며, 임·직원 인건비 또는 공과금 등 단체 운영비는 편성 불가합니다.

다. 보조금 지원 상한액은 계속사업 기준 1개 단체당 30백만원 이하, 신규사업 기준 1개 단체당 8백만원 이하입니다.

※ 계속사업: 직전 2년(2024~2025년) 내 동일·유사한 내용의 사업으로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 신규사업: 직전 2년(2024~2025년) 내 본 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았거나 다른 내용의 사업으로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라. 자부담금 의무 편성 비율은 보조금 대비 자부담금 비율 7% 이상*이며, 사업선정 평가 시

10% 이상 ~ 20% 미만은 5점, 20% 이상은 10점의 가산점이 부여됩니다(자부담 비율 7% 미만일 경우 심사 제외). * 2026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행안부·광역시·도 등 공통 선정기준 적용
마. 보조금 지원 선정 이후 보조금 교부신청 시에는 공모신청 시 단체에서 제시한 보조금 대비 자부담금 비율 이상으로 자부담금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7. 교부신청 및 사업추진 기간

가. 보조금 교부신청 기간: 2026. 4. 15. ~ 11. 13.

나. 사업비 집행 등 사업추진 기간: 2026. 6. 4. ~ 12. 15. 범위 내에서 단체별 교부결정서에 따름

※ (6.3.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의거 6. 4.부터 보조금 교부 예정

8. 심사 및 선정결과 통보

가. 의 결: 부산광역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

나. 심사기준: 2026년도 공익활동 지원사업 행안부·광역시·도 등 공통 선정 심사 기준 적용(붙임1)

다. 지원·심사 제외사업 * 2026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행안부·광역시·도 등 공통 선정기준 적용

1) 사업신청 자격이 없는 단체가 신청한 사업

가) 부산광역시에 등록하지 않은 비영리민간단체

나) 등록요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관내 사무실 설치·운영 등)을 유지하지 못하는 단체

2) 단체 활동과 관련하여 불법 사실이 있는 단체가 신청한 사업

가)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해당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처벌 받은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3) 전년도 부산광역시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공익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단체가 신청한 사업

가) 전년도 사업 선정 후 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중도포기한 단체

나) 전년도 사업 정산결과 부당집행으로 인한 환수액이 100만원 이상 또는 단체별 보조금 총액의 5% 이상인 단체

다) 전년도 사업 종합평가결과가 ‘미흡’인 단체

라) 전년도 사업 회계분야 평가(정산평가) 결과가 22점 이하(45점 만점)인 단체

4) 보조금 지원단체의 정보 공시의무를 미이행한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5) 보조금 부정사용 등으로 공익사업이 취소된 단체 및 사업비 반납 미이행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6) 최근 5년 연속으로 공익사업에 선정된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7) 단체의 정관·회칙상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사업

8)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위원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단체

9)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고·지방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국민운동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10) 유사·중복사업 지원 배제

가)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광역시·도, 특례시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사업의 내용, 범위, 대상 등)의 공익사업 또는 일반 보조사업을 포함한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9.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사업 종합평가

- 가. 사업 선정 결과 통지(26. 4월 초) 후 교부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검토를 거쳐 보조금이 교부되며 교부신청 내용, 사업실행계획 등이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보완이 완료된 시점을 보조금 교부신청일로 합니다.
- 나. 교부신청 기간(2026. 4. 15. ~ 2026. 11. 13.) 내 교부신청 완료되지 않을 경우, 포기 단체(위의 8-다-3)-가))로 간주합니다.
- 다. 사업비는 위의 1-가의 1)과 2)와 동일한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부산은행 계좌 및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통해 집행하여야 하며 계좌이체 한도 및 카드 결제한도는 명의자의 신용도에 의거 은행 및 카드사의 심사에 따라 적용됩니다.
- 라. 사업 완료 시에는 2개월 이내(단, 2027. 1. 31.을 초과할 수 없음)에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사업 완료 후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결과는 다음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 시 반영됩니다.
- 바. 2026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해당 사업 평가 보고서(2027. 4월 부산광역시 누리집(www.busan.go.kr)을 통해 공개 예정)를 단체 자체 홈페이지 등(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는 2027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평가 및 2028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 시 심사지표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반영지표 및 행안부-광역시·도 등 공통 선정기준 적용

10. 기타

- 가. 사업선정 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신청자격 상실, 유사중복 지원 등 부적격 요인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나. 지원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 및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단체는 관련 법에 의거 형사처벌되며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회계처리지침 교육(2026. 4월 예정)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 라. 공모사업 신청 등 기타 문의: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051-888-1829)

- 붙임 1. 2026년도 공익활동 지원사업 행안부-광역시·도 등 공통 선정 심사 기준 1부.
2. 2026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신청서 및 첨부서식 1부(별첨). 끝.

붙임1 2026년도 공익활동 지원사업 행안부-광역시·도 등 공통 선정 심사 기준

1. 공익활동 지원사업 심사·선정 개요

- 심사 방식 : 사업의 공익성·독창성·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통해 공개경쟁으로 선정
- 선정 원칙 : 단체별 1개 사업만 신청 가능하고, 1개 사업만 선정·지원

2. 심사 제외사업 (신청단체 적격심사)

- 사업신청 자격이 없는 단체가 신청한 사업
 -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시·도, 특례시에 등록하지 않은 비영리민간단체
 - 등록요건(법 제2조에 따른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해당 시·도에 사무실 설치·운영 등)을 유지하지 못하는 단체
- 단체 활동과 관련하여 불법 사실이 있는 단체가 신청한 사업
 -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해당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처벌받은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전년도 행정안전부, 광역시·도, 특례시의 공익사업에 선정된 후 공익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단체가 신청한 사업
 - 전년도 사업 선정 후 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중도포기한 단체
 - 전년도 사업 정산결과 부당집행으로 인한 환수액*이 100만원 이상 단체

* 광역시·도, 특례시는 부당집행 환수액이 100만원 이상 또는 단체별 보조금 총액의 5% 이상인 단체

- 전년도 사업 종합평가결과가 '미흡'인 단체
- 전년도 사업 회계분야 평가결과가 '50점 미만'*인 단체

* 부산광역시: 45점 만점 중 22점 이하

- 보조금 지원단체의 정보 공시의무를 미이행한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 광역시·도, 특별시도 지방보조금법 부칙 제4조(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 공시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25년부터 적용됨
- 보조금 부정사용 등으로 공익사업이 취소된 단체 및 사업비 반납 미이행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최근 5년 연속으로 공익사업에 선정된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단체의 정관·회칙상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사업
- (절대평가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위원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단체는 미선정
-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고·지방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국민운동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유사·중복사업 지원 배제
 -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광역시·도, 특별시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사업의 내용, 범위, 대상 등)의 공익사업 또는 일반 보조사업을 포함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유사·중복사업 지원 배제범위 비교 〉

	다른 내용 사업 지원	유사·중복사업 지원
① 행안부 공익사업 ↕ 광역시·도, 특례시 공익사업	X	X
② 행안부 공익사업 ↕ 광역시·도, 특례시 일반 보조사업	O	X
③ 행안부 공익사업 ↕ 중앙부처 일반 보조사업	O	X

※ 사업선정 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신청자격 상실, 유사·중복 지원 등 부적격 요인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음

3. 심사·선정 기준

○ (선정 기준) 사업의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 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선정(영 제8조)

○ (선정 지양 중점 심사 사항)

- 사업 전체가 단체의 홍보나 기념행사인 사업
- 장학금 수여 위주 등 단순 재정 집행적 사업
- 단체의 회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 재산 증식이나 자산 구입을 위한 사업
- 국제교류·협력이 아닌 한국국제협력단의 국제 원조·구호와 유사한 사업

《2026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심사·선정 기준》

분야	심사항목	착안사항	배점
단체 역량 (20)	전문성 및 책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사업 전담인력 확보 등 적정인력의 구성(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인력 2명 이상(5점), 1명(3점), 없음(0점) · 최근 3년 공익사업실적과 신청사업의 유사성 여부(5) · 최근 3년 공익사업실적과 단체 설립목적의 부합 여부(5) 	15
	최근의 단체 공익활동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 단체 자체의 공익사업 추진실적(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건 이상(3점), 2건(2점), 1건(1점), 없음(0점) · 최근 3년 국가 및 지자체, 기업, 기타 재단 등으로 부터 지원받은 공익사업 추진실적(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건 이상(2점), 1건(1점), 없음(0점) 	5
사업 내용 (70)	공익 적합성 및 실행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사업의 공익 적합성 및 정부정책과 상승효과(10) · 사업계획의 구체성, 이행 용이성 등(10) 	20
	사업의 독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달성 및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기법 발굴(10) · 지원단체의 연례적 사업이나 행사 이외의 사업 등(10) 	20
	사업문제해결 및 외부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대비 목표 달성의 효과성 여부(4) · 사업 목적과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의 적정성(4) · 관련 기관 및 외부자원과의 연계성 등(4) · 추진사업의 1회성 이벤트사업 여부(3) 	15
	파급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에 고려한 사업 수혜범위의 적절성(2) · 주민욕구를 반영한 사업인지 여부(5) · 전국적인 사업으로의 파급 가능성 등(8) 	15
예산 (10)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지원요구 금액의 적절성(3) · 인건비와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및 건전성(5) · 각 예산 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등(2) 	10
가감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상위 우수단체 가점(3점 범위) · '26년 지원사업 유형 수요조사 참여단체 가점(0.5점) · '26년 국민 아이디어 구체화 신청사업 가점(0.5점) · 의무적 자부담 비율 가점(10점 범위) · 평가결과 등 자체 정보공개 여부 감점(△2점 범위) 	+α
총 점			100점 +α

4. 전년도 평가결과의 심사 반영 및 가감점 사항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특례시장은 매년 당해 연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영 제12조).

○ 전년도('24년) 사업 종합평가결과의 심사 반영

- (가점 부여) 공익사업 성과, 회계처리의 적법성 등을 평가하여 전년도 사업 평가 우수단체 중 최상위 10% 이내 3점, 차상위 10% 이내 2점, 차차상위 10% 이내 1점 가점 부여
- (지원 배제) 행정안전부, 광역시·도, 특례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 예정
 - 사업별 종합 평가 결과가 '미흡'인 단체,
 - 회계 분야 평가 결과가 '50점 미만'인 단체,
 - * 부산광역시: 45점 만점 중 22점 이하
 - 부적정집행 환수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단체
 - * 광역시·도, 특례시는 부당집행 환수액이 100만원 이상 또는 단체별 보조금 총액의 5% 이상인 단체

○ 기타 가점 사항

- (수요조사) 당해 연도 지원사업 유형 수요조사(25. 12. 1. ~ 12. 12.)에 응답한 단체는 심사점수(100점 만점)에 0.5점의 가점 부여
- (의무적 자부담 비율) 의무적 자부담으로서 보조금 대비 자부담 비율에 따라 심사점수(100점 만점)에 10점 범위* 내 가점 부여
 - * 7 % 이상 자부담 의무화, 10% 이상 5점, 20% 이상 10점

○ 감점 사항

- (비영리민간단체의 자체 정보공개) 전전년도('24년) 평가 결과를 단체 홈페이지, 블로그, 네이버 밴드 등 SNS를 통해 미공개 시 △2점 감점 부여